

제주지방법원 2022. 11. 21 선고 2022가단5283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,549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8. 1.부터 2022. 9. 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(무변론판결)

판사 이동호

별지